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. 10. 16 선고 2024가단7011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, 유병연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세윤

피 고 1. B

2. C

3. D

변 론 종 결 2024. 9. 25.

판 결 선 고 2024. 10. 16.

주 문

- 별지 목록 제1, 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/22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 C와 소외 E 사이에 2023. 12. 15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,
나. 피고 C은 소외 E에게 진정명회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,
다. 피고 D는 피고 C에게 2023. 12. 22. 접수 제207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별지 목록 제3, 4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/2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와 소외 E 사이에 2023. 12.
15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8,851,19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, 피고 B는 원고에게
38,851,1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

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(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‘소외 E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’라고 특정하였으나,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진정명회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선택한다)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근거

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제1항)

판사 김태형

별지